

기업윤리강령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[목적]

본 강령은 이니시스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 이익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, 윤리기업으로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범위]

기업윤리강령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 2 장 윤리규칙

제 3 조 [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금지]

- 모든 경쟁은 법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.
-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(이하 "거래선"이라 한다)과의 거래 등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한다.
-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[영업활동]

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거나, 계획중인 업체나 개인(이하 "영업업체"라 한다)에게 영업활동을 할 때 도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회사 이익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제 5 조 [과도한 선물 및 접대 금지]

-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,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선물,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임직원은 거래선과 영업업체의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접대와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.

제 6 조 [투명한 경영]

-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

2.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3.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,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4.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거나,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제 7 조 [임직원에 대한 존중]

1.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.
2.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3.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
제 8 조 [인재의 육성]

1.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2.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.

제 9 조 [공정한 대우]

1.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2.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노상한다.
3.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벌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여부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.

제 4 장 임직원의 책무 및 거래선과 영업업체에 대한 지침

제 10 조 [임직원의 책무]

1.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.
2.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.
3.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특히 전산 및 PC 자료보호에 노력한다.

제 11 조 [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거래]

1. 임직원 간의 과도한 금전차용(1,000,000 원 초과)이나 대출보증(5,000,000 원 초과)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2.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, 과도한 부조(100,000 원 초과)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.
3.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(1 인당 100,000 원 초과)이나 과도한 향응(1 인당 100,000 원 초과)을 제공할 수 없다.

제 12 조 [거래선과 영업업체의 선물, 향응, 금전거래]

1.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과도한 향응(1 인당 100,000 원 초과)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.
2.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과도한 금품(현금 및 상품권, 교환권 등의 유가증권) 및 선물(100,000 원 초과)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.

제 13 조 [신고자에 대한 보호]

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,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제 14 조 [징계]

1.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2. 임직원은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 및 향응, 선물을 받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3.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 [시행일]

1. 이 규정은 2002.05.01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5.11.11 부터 시행한다